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 설치 등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4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 설치 등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5
다. 관계 기관 의견	9

I. 개요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14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6. 9.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에서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 설치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¹⁾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대여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면서(안 제102조제4항),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인구구조의 변화가 장기적 재정 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나 인구투자(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는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이하 “인구투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추가·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③ (생략)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u>환경·사회·지배구조</u> 등의 <u>요소를</u> 고려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④ ----- ----- ----- -----<u>환경·사회·지배구조</u> 등의 <u>요소</u> 및 투자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u> (이하 “<u>인구투자전문위원회</u>”라 한다)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인구투자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u> <u>나.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가 인구구조의 변</u>

현행	개정안
③·④ (생략)	<u>화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에 관한 사항</u> <u>다. 그 밖에 기금의 인구투자(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인구투자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인구투자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u>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고려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제103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증권을 매매·대여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용위원회 산하에 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인구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운용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초고령사회 진입(2025)과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규모는 커지는 추세인 반면, 저출생 기조에 따라 신규 가입자 확보는 정체되어 2054년경부터는 기금 수지의 적자 전환이 전망되는 상황인바,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인구투자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가입자 확보·유지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 다만, 저출생 대응을 위한 그간의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위기 극복에 요구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합계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하여온 경과를 고려할 때,

기금의 인구투자 성과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른 인구투자가 기금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만큼이나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 유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인구투자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효과가 충분히 가시적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급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의 기금³⁾을 그 설치 목적 외의 부수되는 정책적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아울러 ESG를 고려할 수 있는 투자방법에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대체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0277호)이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6. 8. 20.) 가결 후 2026년 9월 8일 현재 정부에 이송된 상황인데,

증권의 매매·대여뿐 아니라 대체투자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투자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화롭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77호) >

[illegible]

현행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77호)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 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국민연금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가입자·수급자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개정안의 인구투자는 기금의 운용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본질적 성격 및 운용 목적 간 차이가 존재함.

인구구조 변화는 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이며, 기금의 개별 투자행위와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효과 간 인과관계는 간접적·복합적·장기적이므로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 정책 및 재정의 역할이므로 기금의 역할로 규정하는 것은 그 본질적 성격과 운용 목적 등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

4)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각 호 생략)